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정 2022. 6. 15., 중소기업부 훈령 제11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중소기업부 소관의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로써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3. “데이터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 “데이터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데이터표준관리”란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의 규칙을 정의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데이터구조관리”란 데이터 모델 설계를 위한 원칙과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를 정의하여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

동을 말한다.

7. “행정표준용어사전”이란 각 행정기관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한글 명사형으로 어휘화하여 표준을 선정하고 정의한 행정표준용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8.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정·고시한 코드를 말한다.
9. “업무규칙”이란 업무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값을 관리하는 조건에 대한 논리식을 말한다.
10.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란 각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1.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란 소관 부서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해당 부서 내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 “데이터품질관리실무자”란 각 소관 부서에서 데이터품질관리 실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데이터 품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최신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것
2.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해 관련 표준을 준수할 것

3. 연계 데이터가 누락 없이 제공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 수준을 확보할 것
4. 비공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방지되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할 것
5. 중복 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할 것

제2장 데이터품질관리 추진체계

제5조(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 ①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로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을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책임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서의 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등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 및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 등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즉시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에게 그 지정 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3. 데이터 표준관리·적용 및 점검
4. 데이터 구조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 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6. 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및 개선
7.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8. 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관리

9. 데이터 품질관리 및 평가
10.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1.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2.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등) ①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실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실무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 품질위원회의 구성 등) ①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데이터 품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의 심의
2.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심의
3.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요청사항 심의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중소벤처시스템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담당부서의 장
2. 산하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부서의 장

제8조(데이터품질관리 교육) ①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관리실무자
2.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업무담당자
3. 각 기관의 정보화업무 담당자
4.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자
5.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자
6.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모델링 방법
2.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3. 업무규칙 도출 방법
4. 오류 데이터 개선 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데이터 품질관리총괄 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스템 담당자 또는 응용프로그램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유관기관 데이터품질 협의회
2.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 협의회
3. 데이터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

제10조(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중소벤처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데이터품질관리 등 처리

제11조(데이터 표준관리) ① 데이터 표준관리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용어
 2. 표준단어
 3. 표준도메인
 4. 표준코드
 5. 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제4호의 표준코드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른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행정표준코드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표준코드를 정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표준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표준관리 프로세스
3. 데이터 표준관리 요소별 명명규칙
4. 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데이터 표준의 적용) 데이터 표준은 각 기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

터가 관리되어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구조관리) ① 데이터 구조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제영역
2. 개념 데이터 모델
3. 논리 데이터 모델
4. 물리 데이터 모델
5. 데이터베이스 객체
6. 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효율적인 데이터구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구조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구조관리 프로세스
3.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데이터 구조관리 요소
4. 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데이터 산출물관리)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책임자는 정보화시스템을 설계 또는 구축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데이터 사전 정의서
2. 코드정의서

3. 도메인정의서
4. 엔터티정의서
5. 속성정의서
6. 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7. 테이블 정의서
8. 컬럼 정의서
9. 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10. 데이터 베이스정의서
11. 연계 데이터 목록
12. 그 밖의 데이터 산출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데이터 품질진단·평가 및 개선) ①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정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및 적절한 데이터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품질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사전에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책임자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및 성능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른 품질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책임자는 개선요구 사항과 관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①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책임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계데이터 정의
2.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 그 밖의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연계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연계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연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연계관리 프로세스
3. 제2항 각 호의 데이터 연계관리 요소
4. 그 밖의 데이터 연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연계데이터 목록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①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 오류 신고 받은 경우에는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오류 원인,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 해당 품질오류 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항목을 관리·작성하여야 한다.

1. 품질오류 신고일
2. 품질오류 신고내용
3. 품질오류 여부
4. 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제18조(성과관리) 데이터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성과 평가를 위하여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세부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여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2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